

고성군 금연·금주구역 지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1201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01. 4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고성군 금연 · 금주 구역 지정 조례

2. 제정이유

- 군민의 휴식공간인 주요공원을 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청정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

3. 주요 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말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금연 · 금주 권장구역 지정 및 금연시설 지원사항을 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금연 · 금주 교육지원 및 계도에 관한사항을 정함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군민의 정책참여 유도 및 시민단체 참여사항을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마. 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정함(안 제9조)
- 바. 건강환경조성 및 활동에 대한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2009-786호(2009. 10 . 6 ~2009. 10 25.)
 - 의견제출사항
- 나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」 제2조제3호
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

5. 본문내용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금연·금주구역 지정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 내 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금연·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금연”이라 함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.
2. “금주”라 함은 음주자가 음주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 한다.
3. “금연·금주 권장구역”이라 함은 어린이·청소년 및 비 음주자 와 비흡연자들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금연·금주를 권장하는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 (금연·금주 권장구역의 지정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민들을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·금주 권장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.

1. 남산공원
2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

제4조 (금연시설 지원) 군수는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 내 전체에서의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설에 대해 일정한 표지의 부착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금연·금주교육)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폐해 예방 및 금연·금주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금연·금주 계도) 군수는 금연·금주 권장구역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청회 등) 군수는 군민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시민단체의 참여) 군수는 금연·금주 환경조성관련 시민단체 및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·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

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군수는 금연·금주 등 건강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("자원봉사단체"를 포함한다)를 위촉하여 금연·금주 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활동비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건강환경조성 및 활동 지원) 군수는 금연·금주 등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의 실천을 위해 상담 및 금연보조제,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